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예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 최장 1년(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채무자)	②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③동의 (채무자)	④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⑤합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시 유의사항

■ 채무조정의 효력

-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 채무조정의 절차의 종료

-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 채권금융회사등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의 해제

- ① 채권 금융회사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법 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 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채무조정 요청서

☐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홍길동	75.09.10.	010-	서울특별시 중구

☐ 채무조정 요청대상

채권금융회사	계좌번호	대출일자	잔액(원)
00은행	000-0000-00	'22. 6. 1.	10,000,000

☐ 채무조정 요청사유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	☐	☐	☐
기타			
☐ ()			

☐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1.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

◇ 본 채권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채무조정요청서 2.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채무조정안 4.변제능력 입증자료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오누리인터내셔널대부(☎02-2093-6255)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제 6조 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 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 6조 5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이에 귀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_____ (인)

채무조정안(채무자용)

☐ 신청인 기본정보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홍길동	75. 9. 10.	010-	서울특별시 중구	
직업	월평균 소득(A)	월평균 생계비(B)	금융비용(C) (타 대출 상환액)	가용소득 (D)
회사원	(A)	(B)	(C)	(D) = (A)-(B)-(C)

※ 월평균 소득(A)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

월평균 생계비(B)는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 채무조정 요청대상

채권금융회사	계좌번호	대출일자	잔액(원)
00은행	000-0000-00	'22. 6. 1.	10,000,000

☐ 채무조정 요청사항

(단위 : 원)

구분		조정 내용	
상환 유예	(Y / N)	희망 유예기간	
		00 개월	
상환기간 연장	(Y / N)	희망 변제기간	
		00 개월	
이자율 인하	(Y / N)	이자율	
		채무조정 전	채무조정 후
		15%	9%
원금 감면	(Y / N)	원금	
		채무조정 전	채무조정 후
		10,000,000	9,500,000
이자 감면	(Y / N)	☐ 이자 감면	☐ 연체이자 감면
기타 사항	(Y / N)	- (상환방법 변경) 원리금균등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방식 - (변제금충당순서 변경) 비용, 이자, 원금 순서→비용, 원금, 이자 순서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인)